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 이행·보고·후속조치 메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의
상설화 및 운영 방안 모색

2024. 12. 11.(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인권위가 개최하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엔인권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다양한 인권 개선 권고를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심의 이후의 국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고를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며, 적시에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보고·이행·후속조치 메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NMIRF’라 불리는 이 메커니즘을 각국이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NMIRF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권고 이행 추진 체계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NMIRF 구축의 요건과 과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연구 결과를 정부, 관계 기관,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형 NMIRF’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프로그램

- 일 시 : 2024. 12. 11.(수) 14:00~16: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진행 :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10 (10분)	❖ 인사말씀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10~14:15 (5분)	❖ 좌장 발언 - 박희권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 석좌교수
14:15~14:45 (20분)	[발제 1] NMIRF의 발전과 해외 NMIRF 구축·운영 현황 - 조영미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
14:45~15:05 (20분)	[발제 2]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추진체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05~15:15 (10분)	[토론 1] 국내 NMIRF 구축·운영 과제와 실행 가능 방안 -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15:15~15:25 (10분)	[토론 2] 국내 NMIRF 구축 전략 제언 : 입법부의 역할 -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5~15:35 (10분)	[토론 3] 국내 NMIRF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축 - 강지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35~15:55 (20분)	자유 토의, 질의 및 응답
15:55~16:00 (5분)	좌장 마무리 발언 및 폐회

목 차

- [발제 1] NMIRF의 발전과 해외 NMIRF 구축·운영 현황 1
 - 조영미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
- [발제 2]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추진체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32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 1] 국내 NMIRF 구축·운영 과제와 실행 가능 방안 61
 -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토론 2] 국내 NMIRF 구축 전략 제언 : 입법부의 역할 64
 -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3] 국내 NMIRF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축 69
 - 강지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NMIRF의 발전과 해외 NMIRF 구축·운영 현황*

조영미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

1. 국가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체계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국가와 지역,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성과 더불어 교차성(intersectionality)도 유엔 인권 시스템에서는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차성 개념이 도입되면서 유엔조약기구들은 인권침해의 복잡성을 더 잘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차별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구제책들은 피해자에게 제한적인 구제만을 제공하고 해당 침해에 대한 완전하고 세밀한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¹⁾ 교차성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범주 예를 들어 성별, 인종, 계급, 성적지향, 장애 여부 등이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경험과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²⁾ 유엔 시스템의 인권 기반 접근법과 교차성 관점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추구하는 유엔 개입의 범위, 효과성,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복합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포괄적이며 확장성을 가진 인권 메커니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기구권고의 국내 이행과정에서도 보편성, 교차성, 확장성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조영미, 문아영, 이대훈, 황필규,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국가인권위원회, 2024)에서 발췌, 요약한 글이다.

- 1) Johanna Bond. *Global Intersectionality and Contemporary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54
- 2) United Nations Network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Guidance Note on Intersectionality, Racial Discrimination & Protection of Minorities," (2022)

유엔은 1948년부터 세계인권선언, 9개의 핵심 인권조약, 주요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가운데 유엔인권기구 심의 및 권고 제도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인권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이다.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조약기구 심의를 통해 당사국에게 인권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 따라 일정 주기의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³⁾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5년 주기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의 제도적 틀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은 이렇듯 여러 규정 준수를 위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 법치 및 민주적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규범을 정교화하고 국제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유엔인권기구의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과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유엔이 국가 이행의 역학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⁴⁾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각국의 이행 및 후속 조치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가 발생해 왔다.⁵⁾ 이는 결국 심의 때마다 재권고로 이어지게 되었다.⁶⁾ 이에 유엔인권기구권고의 국내의 이행에 대한 노력은 국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체계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OHCHR,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2002) 참조.

4) Paterson, Elli. “The emergence and coming of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 up.” Universal Rights Group. (2019)

5) Universal Rights Group.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A first global survey of national human rights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s. Geneva: Universal Rights Group. (2024)

6) 예를 들어 최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기술매개폭력 예방조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기소유예 관행 폐지,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방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권리 회복, 정치 대표성 제고, 15시간 미만 노동자 보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여성의 진입장벽 제거, 협약 제16조 제 1항 유보철폐(부성 우선주의 폐지) 등이 재권고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국가가 유엔인권권고를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며, 국내 이행 경과를 점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인 국가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체계(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⁷⁾를 구축하는 일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에 대해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반에 걸쳐 이행 조치를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그 절차와 메커니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엔은 유엔인권조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 및 후속 조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각 국가가 상황에 맞게 이를 운영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는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이행에 대한 국내의 이행, 보고, 후속 조치를 위한 국내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실제 개별 국가가 어떻게 국내적으로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기반한 권고를 국내에 잘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이행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2년부터 보고서 및 유엔 결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도입 등 국가 차원에서 확대되고 제도화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 절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의 권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이행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유엔인권기구권고의 국내 이행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의 위상과 그 적용의 메커니즘, 국제인권권고의 국내법적 위상이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고 및 이행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유엔인권기구권고에 대한 후속 이행에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NMIRF는 국가가 유엔인권권고를 이행하고(implementation), 이행상황을 유엔에 보고하며(reporting), 국내 이행 경과를 점검하는 등의 후속 조치(follow-up)를 위한 국가의(national)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제도(mechanism)를 의미한다.

2. 국가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체계(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의 국제적 발전 동향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가 어떻게 국제인권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의 내재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 왔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크게 조약기구에 의한 국가별 심의, 개인통보 절차와 특정 주제 또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인권 사안에 대해 인권전문기구(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등)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 등에 권고하는 특별절차 그리고 UPR로 나뉜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인 국가는 유엔조약기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및 특별절차를 포함한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무와 권고에 대한 국가적 후속 조치와 이행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 의무를 가진다. 현재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인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실제 개별 국가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기반한 유엔인권기구권고를 국내에 잘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국가 간의 이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체계의 국제적 발전은 2012년 OHCHR의 조약기구 강화보고서⁸⁾에서 처음으로 국내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핵심 권고하였다. 2014년 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⁹⁾ 국가는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에 있어 국가 차원의 효율성, 조정, 일관성 및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보고하는 것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을 주제별 또는 이행 책임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기적인 협의와 이행과정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의회의 핵심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법부에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알리고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결을 수집하고 전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2014년 글리온 인권 대화¹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권고를 제시했다. 하나

8) A/66/860

9) A/66/268

는 모든 국가는 국가 이행계획 개발과 진행 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책임을 지는 국가인권 정책구조(Standing National Reporting and Coordination Mechanism, SNRCM)를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인권기구권고의 통합을 위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국가의 이행상황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조약기구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 강화 및 증진"에 관한 총회 결의 68/268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결의는 국가 차원의 보고 조율 개선의 필요성(20항)과 모범 사례에 대한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의 68/268 41항에 규정된 2020년 조약기구 검토 절차의 틀에서, 공동 촉진자 보고서는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도입 또는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확대되고 제도화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진행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와 관련한 2015년 이후의 4개의 결의¹¹⁾를 채택하고 국가의 인권 후속 조치 시스템과 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강조하였다. 결의 30/25(2015)은 국가가 국가 인권 후속 조치 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결의 36/29(2017)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기여를 강조한다. 결의 42/30(2019)는

10) 글리온 인권 대화는 노르웨이와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연례 회의로 약 60여명의 고위 정책 결정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환경에서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해결책 중심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리온 인권 대화는 정부 대표, OHCHR, 유엔 관련 기구, 그리고 특별 절차 권한 보유국, 조약기구 위원, NGO 등 인권 체계의 서로 다른 핵심 대표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 체계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한 논의 내용은 비공식 보고서에 요약되어 주요 메시지, 아이디어,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며 더 확장된 논의를 장려하고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 개최한 첫 번째 글리온 인권 대화에서는 “OHCHR과 국제인권 시스템: 향후 20년(OHCHR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The Next 20 Years)”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 개최된 두 번째 대화에서는 “인권이사회 10주년, 연계성 향상, 영향력 강화(The Human Rights Council at 10: Improving relevance, strengthening impact)”를 주제로 다루었다. 2016년에는 브베에서 “인권 이행과 준수: 국제규범을 지방의 현실로(human rights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urning international norms into local reality)”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https://www.universal-rights.org/the-glion-human-rights-dialogue/>)

11) A/HRC/RES/30/25 (2015), A/HRC/RES/36/29 (2017), A/HRC/RES/42/30 (2019), A/HRC/RES/51/33 (2022)

이러한 메커니즘의 한 축으로서 이행을 소개하였고 2016년에 각 국가는 인권이사회에서 이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0월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주도하에 진행된 회의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 제네바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인권이사회 결의 51/33(2022)로 채택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국가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실천 커뮤니티 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상 지식 허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2021년에 개최된 지역 협의의 결과이자 2022년 6월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보고서(A/HRC/50/64)에 담긴 권고 중 하나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별 국가가 국내 이행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자간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마라케시 선언¹²⁾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모로코의 주도하에 NMIRF의 설립 또는 강화를 촉진하고 NMIRF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으로 NMIRF 간의 협력, 파트너십, 대화, 전문성과 경험의 교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러한 국내 이행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조약기구 권고의 이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인권 실현의 의무 이행을 위한 인권이사회 결의 51/12(2022)¹³⁾를 채택하였다. 이는 공공서비스 내 인권문화 증진이 인권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후속 과정으로 2023년 8월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인권 문제는 개개인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에서 더 잘 이해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노력을

12) 모로코 왕국의 인권 부처 간 대표단이 덴마크 인권연구소와 협력하고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인권 분야 국가 이행, 보고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마라케시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총 50명의 국가 대표들이 모였고 UNDP와 아랍 국가 연맹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국제 보고와 후속 조치를 넘어 각국 정부의 주요 책임인 NMIRF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3) A/HRC/RES/51/12 (2022)

통해 인권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모든 지방정부 업무에 인권을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복잡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 및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지역적 해결책과 포용적인 다자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적 필요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부 수준 간의 대화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행위자 간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⁴⁾

이렇듯 NMIRF는 정부의 메커니즘 또는 구조로써 국제적, 지역적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 및 참여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은 조약기구의 의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은 효율성을 창출하고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가의 주인 의식 형성, 부처와의 정치적 상호작용, 보고서 준비를 포함한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 참여를 체계화, 합리화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하고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 부처 담당자에게 부처 내의 인권 시스템과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회,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주류화, 보편화하고 인권에 대한 대중 담론을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인권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즉,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실질적 이행체계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주류화, 보편화하고 인권에 대한 대중 담론을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인권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4) A/HRC/RES/56/32 (2024)

3. NMIRF의 역량

1) 국가보고서 준비 절차에 따른 필요 역량¹⁵⁾

국가보고서 준비 절차에 따른 필요 역량 또한 중요하다.¹⁶⁾ 국가보고서는 국내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인권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규범 전반에 대한 진전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조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과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국가보고서는 국가의 인권 이행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와 분석, 그리고 미흡한 점과 도전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다.

계획 및 정리에 있어서 당사국은 보고 주기, 국가의 조약기구 비준 또는 가입 날짜, 후속 조약기구 가입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한 조약을 정리하고 보고서 제출기한과 과거 보고서 제출일을 검토하고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년에 걸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록과 작업 계획에는 UPR 보고와 같이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한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 과정에는 책임자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 작성은 주로 인적 자원에 투자가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보고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보고 프로세스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데이터 수집, 초안 작성, 회의 등 명확한 준비 일정을 정리하고 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에게 책임을 할당하며 건설적인 대화 참여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역량 강화 활동은 보고서 준비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OHCHR. National Mechanisms for Reporting and Follow-up - A Practical Guide to Effective State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2016)

16) OHCHR. Reporting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Training Guide. (2017)

주요 부처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의 핵심 인사로 구성된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그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또는 각 주무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안 작성 그룹 구성 시에도 성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는 주제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국가보고서에서 국제인권법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후 해당 업무 영역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고 메커니즘의 유형과 관계없이 인권 보고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행정적 의지와 함께 공동된 접근 방식, 적절한 조정, 명확한 일정 및 업무의 배분은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주요 사안을 파악하는 부분에서는 연계 및 조율 역량이 중요하다. 당사국의 조약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조약 이행과 관련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제를 식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분석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연계, 조율, 정보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유엔조약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출처, 초안 작성을 위한 구성원이 각 조약에 명시된 권리 및 보고 지침, 특정 조약기구의 일반적인 견해, 국가의 정보 관련 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연계, 조율, 정보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모니터링을 위한 메커니즘, 특정 이슈에 대한 국내 상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공식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의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초안 작성 그룹은 다른 조약기구의 권고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권고일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슈 목록을 정교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며 유엔인권조약기구와 연관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행 추적이 포함된 자료를 평가해야 한다.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면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고 이것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 특히 특정 부문을 담당하는 부처에 가능한 폭넓은 논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정보는 보고

및 검토 절차에 대한 의회 통보, 의견 제출을 위한 보고서 초안 제출, 조약기구의 보고서 검토 후 권고안 전달 등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상설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 등과의 초안 배포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적 투자를 수반하지만,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국내 인권상황에 비추어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준비과정을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중 전달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보고서 초안을 일정 기간 인터넷에 게시하고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취합한 초안과 수정된 초안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이 어떻게 고려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조율 및 협의 역량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완결 및 승인 과정에서는 내부 조정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접수된 의견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수정한 후, 의회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조율 역량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조약기구 사무국과의 연계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1〉 국가보고서 준비 절차 및 필요 역량

국가보고서 준비 세부 단계	국가 메커니즘에서 필요한 주요 역량
계획 및 조직	연계 및 조율 역량
주요 사안의 파악	연계 및 조율 역량
정보 취합 및 자료 수집	조율 및 정보관리 역량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초안 작성	연계, 조율, 정보관리 역량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및 협의	조율 및 협의 역량
보고서 완결 및 승인	조율 역량
보고서 제출	연계 역량

*출처: OHCHR (2017)

2)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운영의 필요 역량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 메커니즘이 충족해야 할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조건을 충족할수록, 그 메커니즘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OHCHR은 2016년 국내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과적인 국내 이행 메커니즘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보고 효과성(reporting effectiveness), 특정 역량 보유의 효과성(Effectiveness in having specific capacities), 포괄적 의미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more broadly) 등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보고 효과성은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주기성을 지킴으로써 적체된 보고서의 양을 줄여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특정 역량 보유의 효과성이란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며 그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및 이해관계를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역량을 의미한다. 셋째, 포괄적 의미에서의 효과성이란 국내 이행 프로세스 전반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조약기구의 권고 및 권고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체계의 구축,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소통의 촉진, 입법 및 정책 검토 지원, 인권 기반 거버넌스 강화와 같이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이행 메커니즘에서 세 가지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내 이행 메커니즘은 단발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상시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입법과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국내 이행에 관계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포괄함으로써 국내 이행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국가 차원에서 국내 이행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담당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결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내 이행 메커니즘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이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전제에서 효과적인 국내

이행 메커니즘이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인 핵심 역량은 참여 역량(Engagement capacity), 조정 역량(Coordination capacity), 협의 역량(Consultation capacity), 정보관리 역량(Information management capacity)의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참여역량은 국제인권기구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권고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해당 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응답을 준비하며 촉진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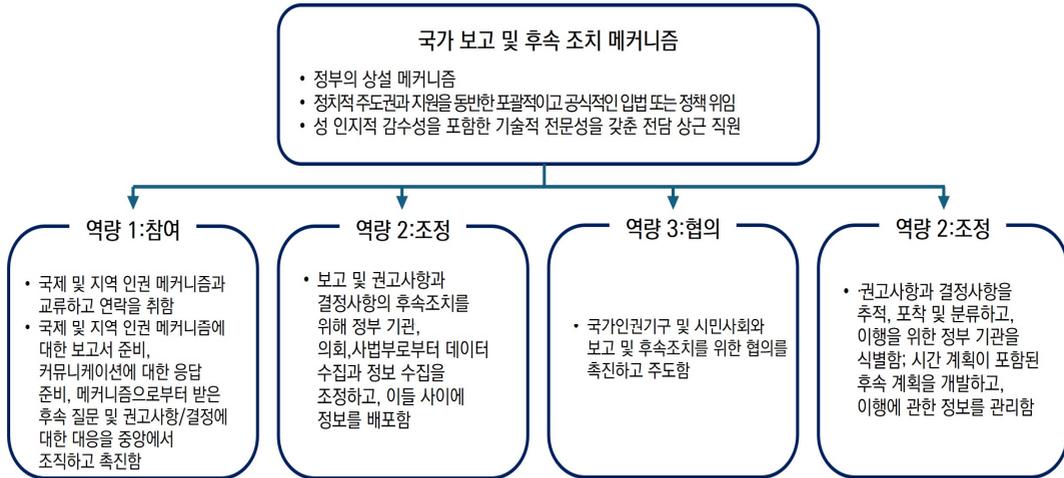
조정역량은 국제 및 지역, 국내의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 및 통계청 등 국내 이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논의를 조직하며,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보고를 진행하고, 심의 이후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의미한다.

협의 역량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해 해당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촉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조약기구들은 UPR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NGO, 법률 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고 의미 있게 협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국가인권기구나 시민사회가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별도의 독립보고서를 통해 제출하고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병행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 국제조정위원회의 일반견해 중 하나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량은 정보관리역량이다.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와 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국가에 부과된 권고와 결정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국내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국내 이행 메커니즘의 담당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즉, 조약의 조항, 권고 및 이행 관련 정보들을 관리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정기 보고서작성을 위한 권고 이행 관련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

량이다. 정보관리 역량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국내 이행 메커니즘에 국가 통계청 대표가 책임을 지고 참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보고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필요 역량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출처: OHCHR (2016)

[그림 1]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필요 역량

4. NMIRF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 개괄

지난 30년간 국제인권 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해 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한 반면,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⁷⁾ 특히 국가 차원의 유엔인권기구권고를 국가가 어떻게 법률과 정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에 관해서는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 이는 관련 업무량 대비 인적 자원의 불충분, 인권기구와 인권위원회 절차 간 수직적 조정 방식, 권고 이행의 중복, 체계적 일관성 부족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주요한 문제점

17) Domenico Zipoli. "National Human Rights Strategie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Geneva Academy Briefing No. 18. (2021)

들이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 이후, 국가가 보편적 규범을 지역의 현실에 적용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인 이행 메커니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이행상황을 수집, 관리, 조정, 추적하는 법적 기구인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제도(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은 OHCHR과 Universal Rights Group을 비롯한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NMIRF의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6년, OHCHR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국가 메커니즘을 4가지 유형-임시(ad hoc), 부처별(ministerial), 부처 간(interministerial), 제도적 분리(institutionally separate)로 분류한 바 있다. Universal Rights Group(이하 URG)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 보고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후속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들의 이행 보고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과정을 통해 2024년 Universal Rights Group(이하 URG)은 83개의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이행 메커니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인권 이행 메커니즘을 ①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② 부처 간 임시조정 시스템, ③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④ 국가 보고이행기구, ⑤ 하이브리드 메커니즘 등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다.¹⁸⁾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4가지는 유형화하여 분류할 수 있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4개의 유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를 하이브리드(복합형) 메커니즘으로 분류하였다. 83개국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각국의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 보고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8) Universal Rights Group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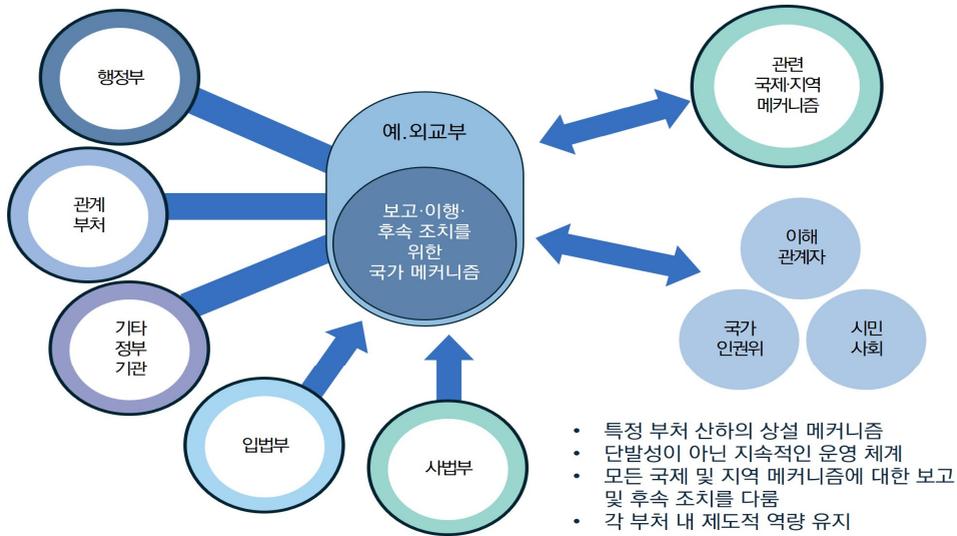
〈표 2〉 국가별 이행 메커니즘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Single ministerial mechanism)	부처 간 임시조정 시스템 (Ad hoc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systems)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Single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mechanism)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 NMIRF)	하이브리드 (복합형) 메커니즘 (Hybrid)
<p>(5개국) 브라질,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바누아투</p>	<p>(16개국) 캐나다, 중국, 체코 공화국, 핀란드,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세이셸, 싱가포르, 스페인, 우크라이나, 베트남</p>	<p>(18개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볼리비아, 차드, 칠레, 감비아, 가나, 이라크, 요르단, 말리, 필리핀, 카타르, 슬로베니아, 수단, 스웨덴, 태국, 토고, 통가</p>	<p>(38개국)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조지아, 과테말라, 이탈리아, 아이티,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몰도바,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르완다, 사모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스위스,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p>	<p>(6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에티오피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몽골</p>

*출처: Universal Rights Group (2024)

1)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은 한 개의 정부 부처가 모든 인권 의무 이행을 조정하고 보고하는 책임을 맡는 방식이다. 주로 외교부나 관련 부처가 이러한 역할을 하며,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유엔인권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은 소규모 국가나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브라질,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누아투 등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단일 부처가 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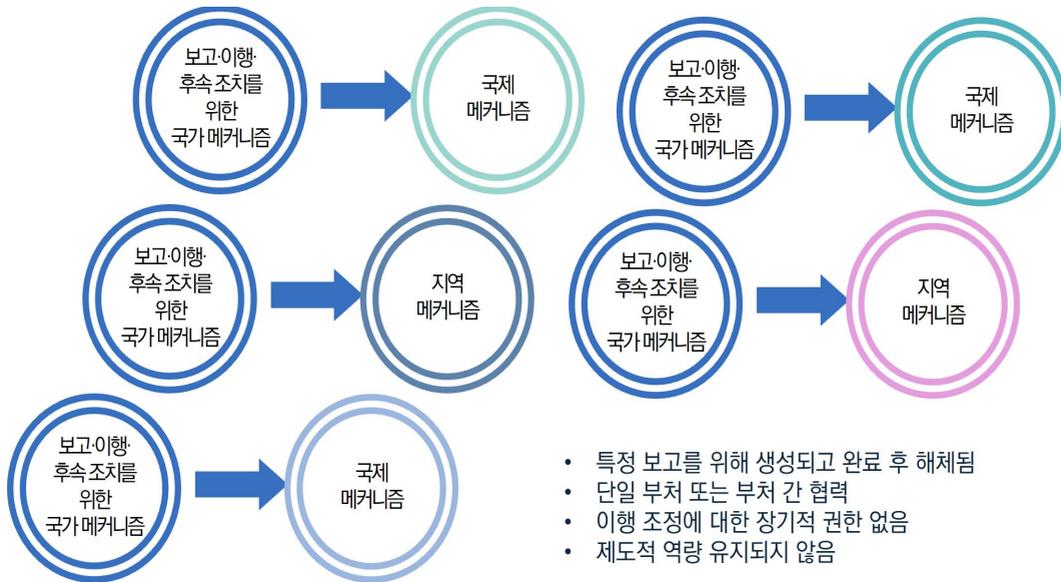


*출처: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9)

[그림 2]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2)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이 시스템은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해 여러 부처가 임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이다. 주어진 임무가 완료되면 해체되기 때문에 상설 조직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보고서 작업을 완료한 후 기능이 중단되므로 어떠한 기관의 역량, 관행, 네트워크 또는 지식이 유지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의 권장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명료한 목표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캐나다, 한국, 중국,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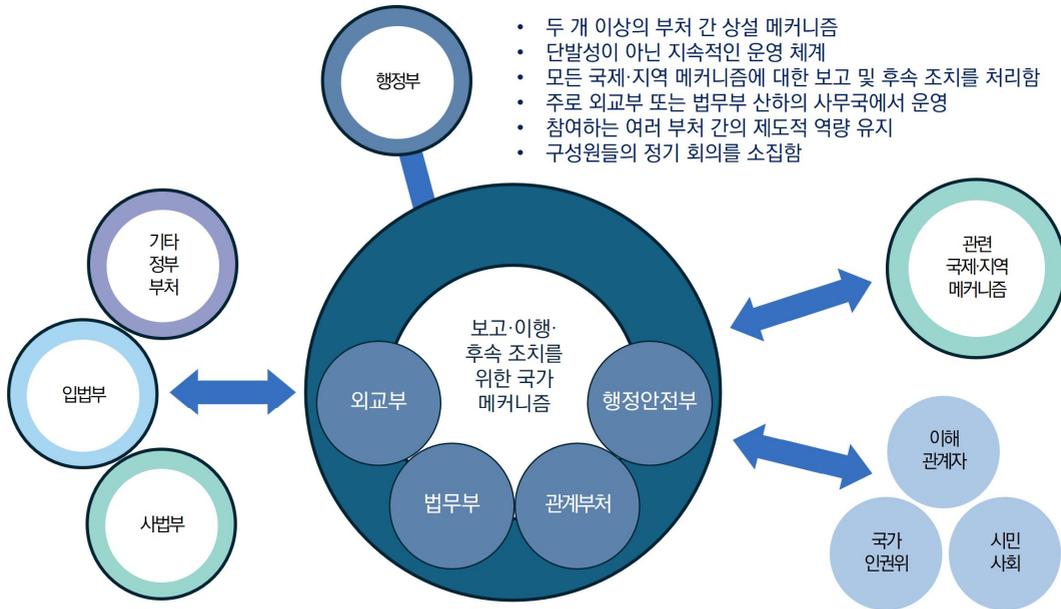
*출처: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9)

[그림 3]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3)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하나의 기구로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인권 의무 이행을 조정하는 상설 구조를 갖는다. 다수 부처의 단일한 조정기구이다. 최소 두 개 이상의 부처에서 공동 구조를 통해 소집되는 상설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외교부나 법무부의 행정과 실무를 제공하면서, 정보 수집을 범 부처상 조정하고, 부처 간 조정 회의에 행정과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식 입법을 통해 설립된다. 정기성을 갖는 회의와 소통 구조를 가지면, 부처별로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 담당 또는 초점(focal point)이 있으며, 이들이 이 기구의 핵심 인적 구성을 차지한다. 이 메커니즘은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제도적 역량, 관행, 규정된 절차, 인적 네트워크 및 지식 생산과 공유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고 여러 주무 부처에 보고 및 조정을 위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부처 내의 정치적 의지의 정도에 따라 효과성이 덜한 경향이 있는 점도 관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감비아, 태국, 스웨덴 등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상설기구는 부

처 간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과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일관된 실행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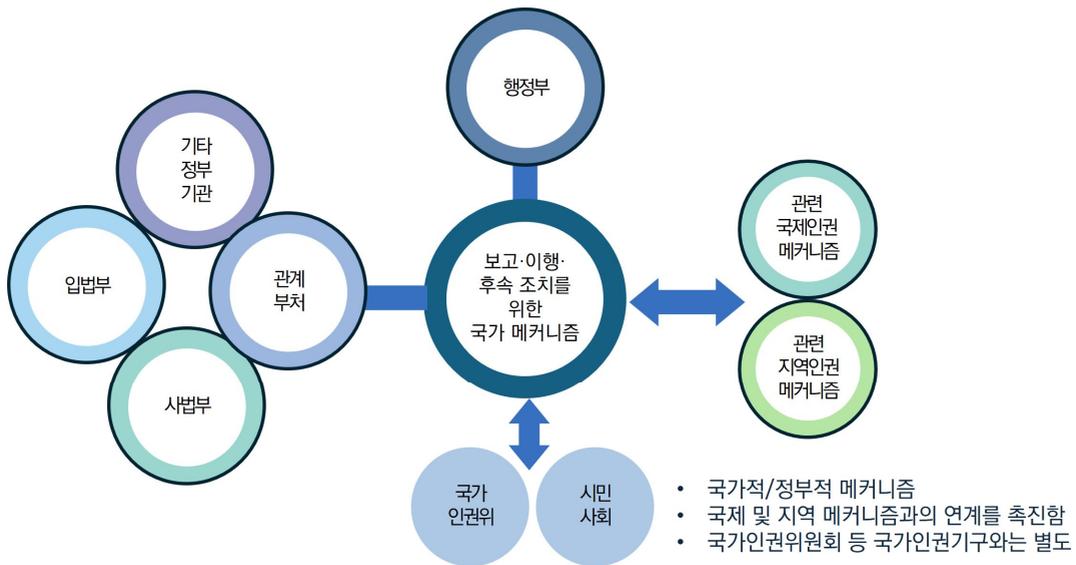
*출처: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9)

[그림 4]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4)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기존 부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에서 ‘별도의 (separate)’ 메커니즘으로도 표현되는,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설적인 유형이다. 법률이나 행정 명령에 의해 설립된 보고서의 작성 및 협의를 담당하는 별도의 상설 기관이다. 별도의 예산, 별도의 직원이 있으며 내부에 의사결정기구, 자체 운영 프로그램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국가보고서가 완료된 후에도 제도와 기능이 유지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역량과 지식 및 소통망을 유지하고 자체 예산과 직원을 독립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기능과 역량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 유형의 국가 메커니즘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고사항을 관리하며, 정부 부처와 국내 인권기구, 시민사회, 심지어 기업까지 포괄하는 협력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스위스 등이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일관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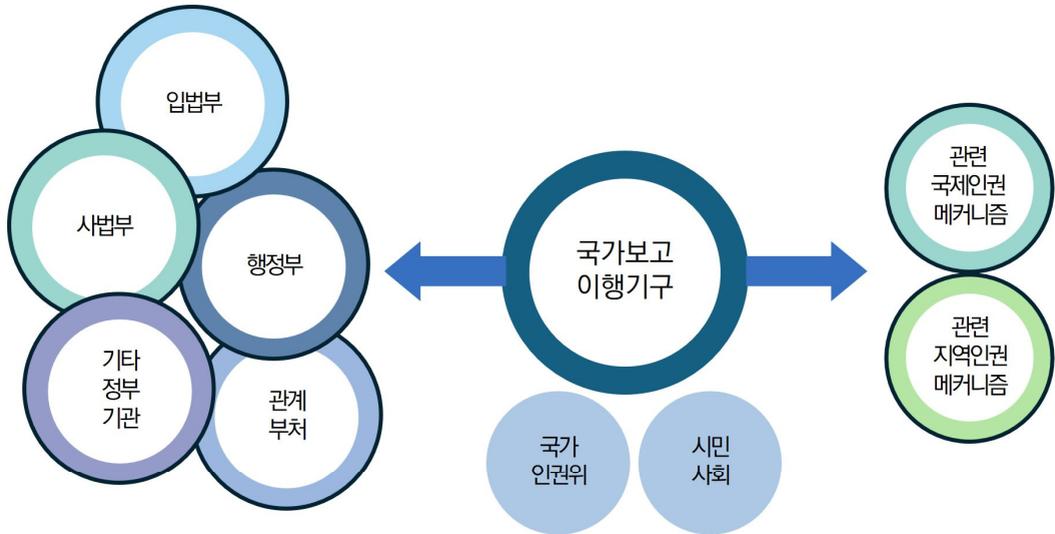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유엔인권기구 권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의 주요 역할은 국제 및 지역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보고 및 검토 일정을 추적하고, 국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분석하고 군집화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를 조정한다.



*출처: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9)

[그림 5]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이 국가 메커니즘의 주요 이점으로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조정, 체계적이고 높은 품질의 참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책임의 효율적 분배, 지속가능한 제도적 역량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 및 지역 메커니즘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국제 인권법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개선하며, 적시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이고 높은 품질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조정
-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참여
-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 지속 가능한 제도적 역량
- 국제 및 지역 메커니즘의 영향력 및 유용성 증가
- 국제인권법 및 권고 사항의 이행 개선
- 시의적절한 보고 및 효과적인 후속 조치

*출처: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9)

[그림 6]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이점

5) 하이브리드 메커니즘(복합형)

하이브리드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을 지칭한다. 일부 국가의 이행 보고 시스템은 여러 카테고리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분류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여러 메커니즘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복합형 메커니즘은 상설적 요소와 임시적 요소를 결합하여 국가의 고유한 행정 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라트비아, 호주,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정치적, 행정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이행 방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NMIRF 구축·운영 중인 타국 사례 및 유형별 특징

국의 사례는 독일, 멕시코, 캄보디아, 모로코, 조지아, 포르투갈, 파라과이,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외 벨기에, 보스니아, 나이지리아, 몽골, 감비아, 르완다, 체코, 몰도바 등의 다수 국가의 사례를 2차 사례로 삼았다.

독일은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사례이며, 멕시코와 캄보디아는 부처 간 임시조정 시스템을 갖춘 국가사례이다. 모로코, 조지아, 포르투갈, 파라과이는 국가보고 이행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사례로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가사례이며, 하이브리드 메커니즘에 속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주요 사례 8개국에서는 국가 메커니즘 부처 간 협의 체계, 국가 메커니즘 기능과 역량 증진 방안, 국가 메커니즘 참여 증진과 운영방안, 국가 메커니즘의 부처 간, 기관 간, 시민사회와의 조정역량, 상담 역량, 정보관리 역량, 국가 인권지표의 개발과 측정, 예산,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능 수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단 자료와 조사 기간의 제약으로 국가별로 조사 주제 모두 균등하게 조사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문헌 조사에 기초하여 각 메커니즘에 따른 조사지 구성 후 각 국가 기관 담당자, 시민사회 담당자에 대한 FGI, IDI 또는 서면 조사, 권고사항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권고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및 기관에서 수행한 조치, 지표 및 과제에 대한 정보, 다수의 국가기구 참여를 통한 국가적 인권 인식 공동체 형성 과정 및 방법, 국제인권기구와 국제 인권사회에 관한 모범 사례 제공과 확산 및 그에 따른 해당 국가 인권기구의 영향력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3〉 국가별 사례조사 주요 내용

주요 연구 영역	주요 국가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독일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멕시코, 캄보디아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감비아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NMIRF)	모로코, 조지아, 포르투갈, 파라과이
하이브리드(복합형)	호주
기타 사례	벨기에, 캐나다, 보스니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체코공화국, 몰도바, 바하마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	SIMORE

*출처: OHCHR (2016), Universal Rights Group (2024)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에 따른 내용 재구성

첫째, 멕시코와 캄보디아와 같이 임시조정 메커니즘을 취한 국가들은 모두 인권조약기구의 결정과 권고 이행, UPR과 기타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명료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항상 외무부에 주어진다. 임시 메커니즘은 제도적 역량과 연속성이 부족하므로 보고서작성과 그 후속 과정에 대한 책임이 명료하지 않다. 이 점은 상설 메커니즘과 비교할 때 보고서 제출 지체 등등에서 분명히 차이를 드러낸다.

둘째, 독일과 같이 장관급 메커니즘은 인권조약기구의 결정과 권고 이행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책임성이 분명히 갖고 있다.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정하거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멕시코와 스페인의 경우 장관급 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단 전문적인 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은 상설적인 실무 및 전문지식 구조를 갖춘 메커니즘에서 잘 드러난다.

셋째,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역시 대부분은 인권조약기구의 결정 및 권고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할 책임과 UPR의 권고와 특별절차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인권NAP에 포함된 권고까지 모니터링 하는

책임도 추가로 갖추고 있다.¹⁹⁾ 국가 메커니즘 중에서 UPR과 인권조약기구의 보고와 권고 및 이행 조치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시 메커니즘은 정부 부처별로 지속적인 인권 담당자(focal) 또는 관련기관 및 인사들의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반면 장관급 메커니즘에는 이러한 인권 담당자와 관련 연락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⁰⁾

다섯째, 부처 간 메커니즘들 역시 정부 부처별 인권 담당자와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²¹⁾ 이로부터 제도화된 협력의 구조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로코와 세르비아처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국가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처별 인권 담당자의 역할과 광범위한 소통 협력 네트워크가 상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을 국가 메커니즘 설립과 운영의 원리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상설 국가 메커니즘을 운용하는 해외 사례로부터 국가 메커니즘의 제도화는 국가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인권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고-후속 조치의 체계적 제도화에 대한 개념과 업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례 서면 보고에 집중하는 업무방식은 이러한 국가 역할에 충실한 방식이 아니다. 또한 국외 사례는 조정, 상담, 협의, 참여역량을 끌고루 갖춘 국가 메커니즘의 장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수의 행정부 부처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도 입법부, 사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협력이 부진할 경우 전반적인 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조약 및 권고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화와 정보공유, 그리고 보고와 후속 업무 절차의 정례화, 매뉴얼화, 의무화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 또는 장관급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가보다 훨씬 정교한 조직 구조와 작업 방식을 갖추고 있다. 전반적인 검토-실행-보고 주기가 있으며 이에 맞춰 업무가 진행된다. 반면 임시 또는

19) 핀란드, 온두라스, 모리셔스, 포르투갈, 몰도바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20)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21)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온두라스, 라트비아, 모리셔스, 포르투갈, 세네갈,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

장관급 제도는 주요 업무가 주로 정기 보고서작성에 맞춰지거나 좁혀진다.

둘째,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인권조약기구와 인권이사회에 대한 그 국가의 인권 의무와 이행과정의 보고와 협의를 체계화하려는 이유는 그 국가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판적 자체 평가 및 자체 진행 상황 모니터링, 실행의 과제와 단점 식별, 소외 집단과 고충 집단의 식별, 인권 기반 법률 및 정책 계획 및 개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략적 국가적 파트너십 수립, 비교 경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국제 수준에서 조언하고 있다. 국가 메커니즘은 이러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제도이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사회 및 일반 시민 사이에 인권 인식을 높이면서 국가인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대화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²²⁾

셋째, 국가별 이행 메커니즘은 형태나 그 운영은 상이하지만, 다음의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 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법이나 법령을 통해 설립된 영구적 ‘상설’ 기구가 보편화되어 있다.
- ② 모두 유엔인권기구 국가 메커니즘 권고를 존중하며 설계 운영되고 있다.
- ③ ‘보고-이행-보고 주기’를 정례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④ 안정적인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운영과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넷째, 부처 간, 이해당사자 간 협의의 체계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권고 직후 구성되는 ‘이해관계자 워크숍’(르완다)이 개최되기도 하고, 매월 주제별 실무 회의를 열어 대응하거나(조지아), 부처별 포컬포인트(담당자)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체계화하는 경우(아제르바이잔, 부르키나파소, 덴마크, 에스와티니, 조지아, 자메이카, 케냐, 모로코, 파라과이, 포르투갈, 사모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회의 주기는 다양하다.

외교부 산하의 장관급 인권위원회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지만 ‘데이터 수집’과 ‘초안

22) National Mechanisms for Reporting and Follow-up: A Study of State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2016, UNHCHR, New York & Geneva, 4-5쪽.

작성'을 담당하는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뉘는 경우(바누아투), 권고에 따라 여러 상임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가 '배경 문서(background documents)를 작성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사무국을 통해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체코도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국가 메커니즘의 주요 기능에 관해서는 제네바 시민정치적권리센터의 '보고이행국가 메커니즘 시각 자료'²³⁾가 잘 요약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는 명료한 입법적 정책적 수입 사항, 상설 구조, 광범위한 계획수립, 정부 내 국가 메커니즘의 역할에 대한 공유된 인식, 주도성, 실무진의 지식과 전문성 등을 들고 있다.

여섯째,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을 법안 심의를 포함하는 입법과정과 제도 신설, 그리고 광범위한 파트너십과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적 메커니즘은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적 기본과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효과적인 국가적 인권보호제도의 촉매제이자 기둥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구조 내에서 인권 전문성, 지식,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은 정부 부서, 의회,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간의 정기적이고 전 국가적인 대화를 자극함으로써, 그 국가의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고, 정기적인 국가 보고와 이행에 도움을 준다. 국가 메커니즘은 모든 정부 부서(행정부 및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 입법부 및 사법부)가 조약 조항, 유엔 및 지역적 권고사항과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게 하여, 해소되지 못한 격차와 과제를 식별하는 능력을 촉진한다. 국가 메커니즘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는 국내 인권 법률 및 정책에 주의를 환기하고 검토를 용이하게 한다. 국가 메커니즘은 더 효율적이며 참여적이고 포괄적이며 책임성이 높은 인권보장 거버넌스에 형성에 기여한다. 국가 메커

23) Cent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 visual guide on the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 (NMRF): outcome summary of a workshop in Myanmar (2019), p.12.

니즘은 다른 국가의 경험, 국제인권기구의 전문가와 검토자의 전문적 권고로부터 인권개선을 위한 지식과 조언을 환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메커니즘은 제도의 수준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 수평적 수직적 인권 대화를 모두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6. 국외 사례를 통한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와 같은 시사점 속에서 한국에서의 국가 메커니즘 설립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며 상설적 운영과 전문적인 실무구조를 갖춘 국가 메커니즘이 임시적 성격의 메커니즘보다 월등하게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이며 상설화된 국가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비판적 자체 평가, 체계적인 모니터링, 광범위한 정보공유와 인식 형성, 과제와 단점의 식별, 소외 집단과 고충 집단의 식별, 인권 기반 법률 및 정책 계획 및 개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략적 국가적 파트너십 형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정교한 조직 구조와 작업 방식 및 표준화된 소통-협력-검토-실행-보고 주기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업무가 진행되어야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조정, 상담, 협의, 참여역량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 협의 역량은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에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화와 정보공유, 그리고 보고와 후속 업무 절차의 정례화, 매뉴얼화, 의무화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계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각 정부 부처, 의회,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간의 정기적이고 전 국가적인 대화를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계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더 효율적이며 참여적이고 포괄적이며, 책임성이 높은 인권보장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다. 앞서 살펴본 독일연방의회의 상설 인권전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부터 국가 메커니즘의 체계화에서 입법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조지아 등의 경우에서처럼 체계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선도적 역할에 토대를 둔 국가 메커니즘의 체계화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호주 등과 같이 OHCHR의 권고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의 참여, 여론변화 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전방위적인 소통과 개입을 통해 사실상의 인권 증진을 가져오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국가 메커니즘과 국가인권기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그리고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은 정부의 일부로서 그 성격과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효과적인 인권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가 메커니즘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 및 이행체계를 담당하고,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인 감시와 권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필수적인 상호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메커니즘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인권기구가 보고 및 후속 조치에 부여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수준과 전략적 중요성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업무 투여도에 국가 메커니즘의 설립과 상호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 간의 법적 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그러한 판례 분석과 입법 분석 및 법 개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는 모니터링 업무에 기초하여 권고의 모든 조치가 인권NAP에 통합하도록 권고하며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요약하면 국가인권기구와 보고 및 후속 국가 메커니즘 간의 상호작용은 설립 이전부터 체계화할 계획 준비가 필요하다. 이로부터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메커니즘의 핵심 기능과 역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 조직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설립을 위한 입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권고를 할 필요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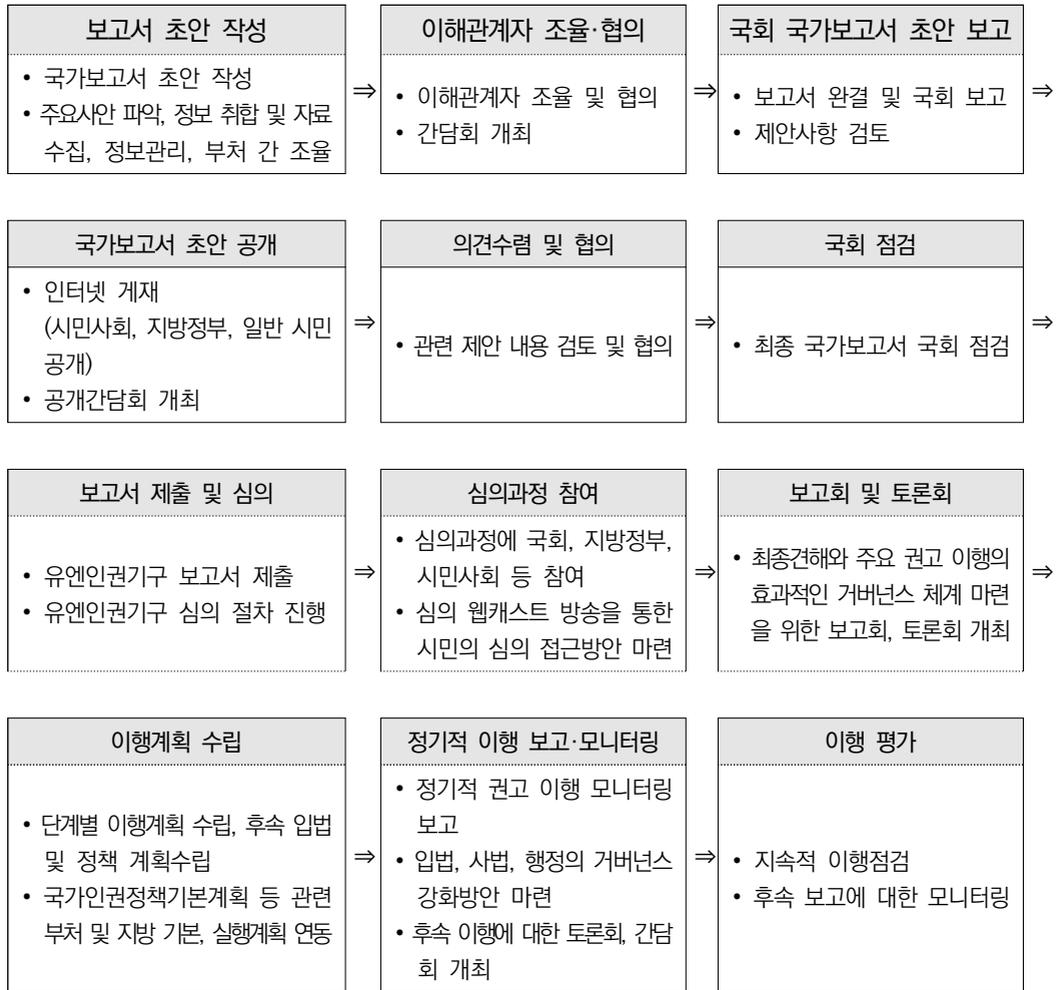
다섯째, 파라과이의 사례와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가 갖는 획기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국가 메커니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인권 정보 체계화를 통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서 국내외 인권기구의 인권보장 노력을 다양한 행위자들과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정

책과 집행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인권보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파라과이의 경우에서처럼, OHCHR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메커니즘 체계화를 위한 인권 정보체계 SIMORE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한 사례에서 큰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런 면에서 이 도구의 명칭도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로 처음부터 사용하고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의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는 국가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포르투갈과 독일의 사례분석에 잘 드러나듯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의 형성은 국가지도자의 인권보장 책임성과 의지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국외 사례의 대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가진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과 정치적 의지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구성한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중심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NMIRF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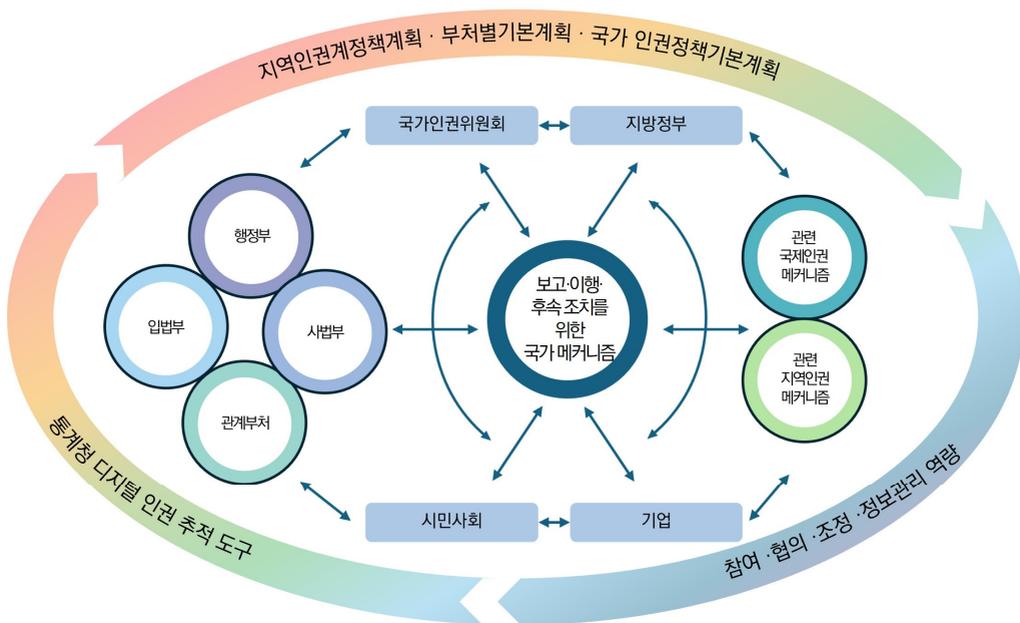
유엔인권규범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보편성, 교차성, 확장성을 갖춘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통한 국가의 신뢰도 및 국제사회의 인권에 기반한 정부 정책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단계별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7]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단계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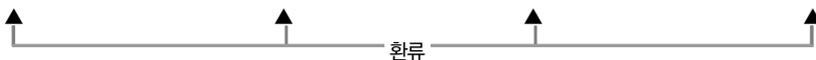
8.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운영방안

NMIRF의 실제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으며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환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환류 구조

보고	사전심의·본심의	이행	후속 조치 환류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인권조약기구 심의	이행계획 및 성과 분석	법안, 정책, 기본계획 검토 및 평가, 환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정부</div> 이행성과 분석 법률, 정책, 프로그램 분석, 데이터 분석 관계부처 회의 부처별 자료요청 초안 국가보고서 작성 초안 공개, 의견수렴 쟁점목록 자료취합 정부 답변서 작성 담당 부처 지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정부</div> 정부대표단 구성 정부보고서 심의 심의 웹캐스트 방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정부</div> 최종견해 접수 한국어 번역, 관련 부처, 국회, 사법부, 언론, 대중 배포 최종견해 분석, 권고 이행 계획 수립 인권지표개발, 평가 후속 보고서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정부</div> 이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영 후속 보고서 제출 부처 실행계획 반영 제안 지역인권정책계획 협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입법부</div> 전자 심의이행 평가 (최종견해 대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점검 국가보고서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입법부</div> 심의 참석 (위원 면담) 모니터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입법부</div>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계획 점검 및 질의 입법과제 점검 모니터링 및 이행 평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입법부</div> 모니터링 및 이행 평가 후속 보고서 확인 프로세스 점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사법부</div> 판결 공람 보고서 초안 작성 협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사법부</div> 심의 참석 법원행정처 최종권고 공람 교육 상설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사법부</div> 최종권고 관련 판결 공람 교육 상설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사법부</div> 판결 공람 교육 상설화 재판편람 제작
보고서작성 협력, 제안	심의 참여 모니터링	이행상황 모니터링	성과공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가 인권위</div> 관계부처 회의 모니터링 NGO 의견수렴 등 확인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쟁점목록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독립보고서 준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의견수렴) 독립보고서 웹페이지 게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가 인권위</div> 심의 준비 기본계획 수립 대표단 구성 및 심의 참석 (위원 면담) 비공개회의 개최 최종견해 분석 독립보고서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가 인권위</div> 심의 결과 보고 및 분석 최종견해 웹페이지 게재 심의 결과 국내 홍보 최종견해 토론회, 간담회, 심포지엄 권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정부 후속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상임위 보고)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가 인권위</div> 이행 과정, 평가 결과 국내 홍보 정부 후속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권 조약기구 평가 서한 확인, 정부 조치사항 점검 후속 보고서 평가 분석 이행상황 모니터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지방 정부</div> 보고서작성 과정에서 지방 사례 제시, 협력 관련 자료제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지방 정부</div> 심의 방청 최종견해에 대한 지방정부 과제 점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지방 정부</div> 심의 결과 지방정부 홍보 최종권고 관련 지방정책 점검 및 이행과제 선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지방 정부</div>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 지역의 관련 정책 평가, 사례 조사 관련 교육 지방정부 사례 자료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시민 사회</div> 국가보고서 초안 점검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을 위한 연대활동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및 정보공유 자료 수집 피해당사자 지원 및 구제정책 점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시민 사회</div> 심의 참석, 위원 면담 관련 시민사회 주체 회의 개최 국제 NGO와의 연대와 협력방안 마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시민 사회</div> 이행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 지원 후속 이행 관련 토론회 <div style="background-color: #ee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이행계획 개선안 도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정부</div> 이행 계획 개선안 및 환류 계획 수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국가 인권위</div> 환류 계획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종합 환류 계획 제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시민 사회</div> 이행 과정 평가 관련 토론회 개최 입법과제 협력 국제 연대활동, 네트워크 구축 국회 입법, 정책 지원 모니터링 지원 <div style="background-color: #ee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후속 조치 평가 환류 체계</div>



·데이터베이스(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 개발 및 지원, 지방정부 참여 확대

[발제 2]

N한국의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추진체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은 1986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지난 약 40년간 여러 유엔인권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다수의 지적과 권고가 포함된 최종견해를 받아왔다. 또한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첫 국가보고서를 포함해 4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역시 다수의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¹⁾ 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이러한 절차와 문헌이 한국 인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정부는 이러한 절차와 결과물로 나온 여러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수용했을까. 이러한 절차가 한국 인권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제와 관행,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2. 유엔인권권고의 법적 성격²⁾

유엔인권권고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형성과 이행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규정하게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https://uhr.humanrights.go.kr/>) 참조.

2) 황필규,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12. 6), pp. 151-154 참조.

첫째, 유엔인권권고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³⁾ 따라서 유엔헌장, 한국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 기타 인권 관련 조약 등과 관련 국제관습법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은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존 법률 혹은 새로운 법률은 국제인권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심사되고, 국제인권법은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적용된다. 행정의 경우 국제인권법은 모든 행정작용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혹은 공무원이 이를 어겼을 경우 국가배상, 직무유기, 성실의무 위반 등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유엔인권권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와 특별절차의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헌장 명문의 규정⁴⁾과 법적 기구인 유엔총회의 결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인권조약과 관련된 권고의 경우, 권고의 주체인 조약기구의 구성과 임무가 조약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⁵⁾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가 제출되고 유엔인권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는 그 권고가 실제적·절차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충분히 존중되고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⁶⁾

셋째, 유엔인권권고는 실제법·절차법적으로 법률에 기초한 권고라는 점 외에도 ‘항구

3)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유엔헌장 제1조 제3항, 제13조 제1항 (b), 제55조 (c), 제56조, 제62조 제2항, 제68조, 제76조 (c) 등.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제17조 등.

6)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박정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 보충의견(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참조.

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⁷⁾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국제협력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에서 유엔인권권고에 대하여 설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⁸⁾ 또한 권고의 수용, 권고의 이행 혹은 이행 노력의 약속은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에 의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⁹⁾ 한편 이러한 약속은 국내법적으로는 법적 기관의 권고에 대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 행정작용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록 유엔인권권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상 의사표시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유엔인권권고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는 경우 이는 행정 계획의 일부로서 법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3.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이행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이행 추진체계의 현황

1) 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 심의, 권고, 이행과정¹⁰⁾

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는 행정부가 작성 주체가 되어 조약 규정 및 이전 최

7) 헌법 전문.

8)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제27조.

10) 이주형,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행정부의 역할,”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과 차별금지』 (2013. 10. 1), pp. 97-104 참조.

종견해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국내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법무부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외교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가족부가, 그리고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은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제출의 소관부처로 되어 있다. 소관부처의 경우 해당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련성이 높은 법률과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가 지정되는 관행이 수립된 듯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이나 정책을 거의 담당하지 않는 외교부가 포함된 것에 비추어 소관 부처의 근거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비록 소관 부처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어 보고서를 집필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에 초안 작성을 맡기고 있다.¹¹⁾

대부분 소관 부처가 총괄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 번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약의 각 조항/이슈나 조약기구 질의목록의 각 항목에 관련 정부 부처, 법원, 국회, 국가인권위 등의 보고서 내용을 취합하게 된다. 각 부처의 보고서 내용 제출부터 최종 국문 국가보고서의 작성, 보고서 영문 번역 및 감수, 그리고 실제 심의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 보고서 제출 시점과 심의 시점의 법제 및 관행에 있어 현황 차이가 난다.

국가보고서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정부는 심의에 대응하여 부처 간 TF를 구성하고 주로 질의목록과 예상되는 추가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심의에 참여한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심의 때마다 관련 10여 개 부처 20여 명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왔다. 심의는 조약기구의 절차 규칙에 따라 보통 1~2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심의가 끝나면 조약기구의 권고인 최종 견해가 발표된다. 최종견해의 내용에 대해 정부입장을 제출,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 중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이행상황을 보고하라는 요청이 담기기도 한다. 정부는 이 특정된 몇 가지 권고에 대해 중간 보고를 하게 되고

11) 신혜수, 서창록, 이주영, 홍미화. “유엔 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절차 이행 연구.” 법무부. (2022), p. 84 참조.

조약기구는 그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최종견해가 나온 후 국내적으로는 소관부처가 다시 관련 부처 등의 이행 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상황 등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체계화된 절차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행 계획과 모니터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 심의, 권고, 이행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다.¹²⁾ 정부는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사회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심의 후에는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국회의원실,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등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히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정례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사회 의견의 반영 여부는 해당 부처의 의지에 달려있다.¹³⁾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조약기구의 심의가 있을 때마다 연대체를 구성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현장에서 NGO 브리핑 등을 통해 NGO의 의견을 전달한다.¹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보고서 중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경우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 보고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¹⁵⁾에 따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조약기구에 직접 독립보고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브리핑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수행한다.

2) 유엔인권이사회 UPR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 심의, 권고, 이행과정¹⁶⁾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는 2006년 유엔인권기구의

12) OHCHR, *Reporting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Training Guide Part I - Manual (2017)*, pp. 68-70 참조.

13) 신혜수, "유엔 인권권고와 국내이행 메커니즘: 한국 내 충실한 이행을 향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3. 12. 3.), pp. 7-8 참조.

14) 위의 글, p. 11 참조.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이주형(2013), p. 104 참조.

개혁 이후 도입된 절차로서, 그 전체적인 과정은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① 내용상으로 특정 인권영역 혹은 취약 집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인권상황 전반을 다룬다는 점, ② 심의의 주체가 인권전문가들이 아니라 회원국 대표자들로서 상호 간의 검토를 한다는 점, ③ NGO, 국가인권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보고서가 먼저 제출되고 국가보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NGO의 입장에서는 회원국 대표자들이 심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외국대사관에 입장을 전달하고 심의 현장에서도 각국 대표부 관계자들에게 권고를 요청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4번의 심의를 마쳤는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예전부터 조약기구에서 권고되어왔던 이슈 외에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 해소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져 왔다.¹⁷⁾

나.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이행 추진체계의 문제점

각 국가기관별로 다음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1) 행정부

- ①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확립된 원칙과 절차의 부재
- ② 인권정책의 실질적 총괄조직의 부재
- ③ 인권에 기초하여 접근을 취하지 못한 정부 정책
- ④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공동의 노력 부재
- ⑤ 인권과 정부 정책과의 분리
- ⑥ 유엔인권권고의 통합적 점검, 이행 시스템의 부재
- ⑦ 유엔인권기구 심의에 관한 불명확한 국내 절차 및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원의 의견수렴의 부실한 접근성
- ⑧ 유엔인권기구의 활동과 그 강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미비

17) 신혜수(2013), pp 10-11 참조.

2) 입법부

- ① 유엔인권권고 이행에 관한 불분명한 국회의 역할
- ② 총체적인 인권정책 및 국제인권권고의 이행 메커니즘 관련 입법의 부재
- ③ 국회 내 국제인권 규범 이행 감시를 위한 체계 부재
- ④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심사와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감시 부재

3) 사법부

- 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직접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권고에 대한 이해 부족
- ③ 유엔인권권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교육의 부재

4) 국가인권위원회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판단 기준으로서 유엔인권권고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미비¹⁸⁾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엔기구 보고 시스템에서의 독립적 역할 미비¹⁹⁾
- ③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부재²⁰⁾
- ④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부족

5) 지방정부

- ① 지방정부의 지역인권조례 제정의 불균형 및 지속 점검 미비
- ② 지방정부의 인권 전담부서의 제한적인 역할과 기능 수행의 어려움
- ③ 지방정부의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의 참여 제한 및 유엔인권권고의 구체적 이행의 어려움

18)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7. 10. 30. ~ 2018. 1. 29.』 (2018, 국가인권위원회) pp. 119-120 참조.

19) 위의 글, pp. 42-45 참조.

20) 위의 글, p. 120 참조.

4.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향

가. 효과적인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을 위한 필요 역량

효과적인 국가 메커니즘은 다음 4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부처 간 조정역량, 다양한 행위자 간 협의역량, 정보관리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참여역량 지표로는 국가 메커니즘의 사무국 설치, 보고서 초안 작성과 발표, 정보공유를 위한 부처 간 협의 네트워크, 표준화된 보고 지침과 절차, 보편적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유엔인권조약기구 보고 의무와 특별절차 방문 등 일정과 계획, 보고서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한 초안 작성 그룹 설립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조정역량 지표로는 정기회의 개최, 정기 조정 회의 일정과 정보공유의 계획, 보고와 유엔인권권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 국가보고서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준비회의, 정보 종합과 초안 작성을 위한 부처별 분담과 표준 양식의 조정, 통계와 기초조사에 근거한 평가 및 법무부의 권고사항의 사법부 전달과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권고가 적용된 판결 현황 관리 등을 포함한다.

협의역량 지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조정된 협의 일정,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위한 별도의 조정 부서와의 협의, 보고 및 유엔인권기구권고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기구 각급 구조와 회의에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의 체계적인 참여, 논평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와의 협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락 체계 구축과 정기적 초청 및 주제별 간담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보관리 역량의 지표로는 유엔인권기구 권고와 결정 추적과 클러스터링, 각 사항의 이행 담당 정부 부처나 기관 식별, 관련 부처와 후속 계획, 일정 개발 및 구현, 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권고 이행의 정보 관리, 보고 개선을 위한 요청과 검토, 각 정부의 실행 계획에 근거한 점검 및 정보 구축, 연차보고서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활동이 포

함될 수 있다.

정부는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에서부터의 설립, 발전 과정, 운영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는 본질적으로 항상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

나.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비추어 유엔인권기구권고의 국내 이행을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개선되고 필요한 기제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1) 행정부

- ① 인권에 기초한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책임 있는 실천
- ②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공동의 체계 구축
- ③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 법제 개선, 관행 개선에서의 인권의 '주류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실행
- ④ 유엔인권기구권고에 대한 통합적 점검, 이행 시스템 마련,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계획 및 인권지표 개발을 통한 환류 체계 수립
- ⑤ 유엔인권기구권고에 대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실행계획 반영
- ⑥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인 유엔인권기구의 심의 관련 국내 절차 마련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 강구
- ⑦ 유엔인권기구 심의 웹케스트의 방송을 통한 중계
- ⑧ 유엔인권기구의 활동과 그 강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기여

2) 입법부

- ①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확인

- ② 입법을 통한 총체적인 인권정책 및 국제인권권고의 이행 메커니즘 마련
- ③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를 위한 조직 구조 상설화
- ④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심사와 권고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국회 보고 및 감시체계 확립
- ⑤ 국제인권규범 이행 및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제고

특히 ③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인권규범의 국회 내 주류화, 특히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 심사 절차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를 심사하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의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별도의 인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할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절차의 효율성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성, 인권에 기초한 접근의 정도면에서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의 유사성에 비추어 기존 유사한 경험과 역량의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관 위원회의 권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의 경우, 심사의 집중성과 전문성,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책임성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관 정부 부처 중심의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와의 부조화, 중복적인 절차의 운영 우려 등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²¹⁾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포함한 인권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인권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원회²²⁾ 구성 등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

21) 최정인,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5권 제3호 (2023), pp. 22-23 참조.

22)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

감시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직 구조 상설화는 효율성 및 효과성 면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요한다.²³⁾ 당장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대한 점검도 촉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작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²⁴⁾ 기존 연구단체 강화 혹은 새로운 연구단체의 설립 등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을 연구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인권단체, 학자 및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연구 모임을 결성하거나 유엔권고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시민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권고 이행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²⁵⁾

3) 사법부

- ① 국제인권조약의 직접 적용 가능한 재판 규범성 공적 확인
- ② 법원내 국제인권규범 내재화를 위한 조직 정비²⁶⁾
- ③ 공적 국제인권법 재판편람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④ 체계적/의무적 교육 상설화

특히 ②와 관련하여 현재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법원의 해외판례의 사용 및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대법원 산하 주요 조직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각 기관은 해외 법제도 및 판례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과 제도적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조직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인권규범의 내재화를 꾀할 수 있다.

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홍일표,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 110 참조.
- 24) 차인순, "CEDAW 협약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사례,"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 118 참조.
- 25) 이동화, "유엔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p. 105-106 참조.
- 26) 이혜영,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2023), pp. 184-190 참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실에 일본법, 독일법, 영미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있는데 국제인권법을 담당하는 필요한 연구인력과 예산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에도 조사위원(독일, 일본, 영국, 미국)들이 행정처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법제 및 판례, 사법정책 등을 조사, 분석,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제인권 담당 조사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국제인권법 담당 전문연구위원과 조사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 지속가능성과 2년 주기의 법관 연구위원과의 적절한 조화 등이 고민되어야 하고 국제인권규범 혹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관련된 과제의 꾸준한 개발과 연구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인권기준 주류화²⁷⁾
- ②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운영 체계화
- ③ 인권위원회 위원과 직원 교육 및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활성화²⁸⁾
- ④ 국제인권규범, 유엔인권권고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계의 재정비²⁹⁾

④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교육국이 중심이 되어 정책교육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하 위원들,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등 모든 국가인권위원회 내 조직에 걸쳐 국제인권규범,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적용이 국내 규범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제인권과는 국제인권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부서에 국제인권기준에 관한 교육과 자료 제공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국제인권규범,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적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27)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2018)), p. 123 참조.

28) 위의 글, p. 53 참조.

29) 위의 글, pp. 101, 123 참조.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직원은 국제인권규범, 유엔인권기구권고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이를 업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숙지,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 인권 시스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과와 인권정책과가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관련 인권 영역 업무 담당자가 이를 담당하되, 총괄과 교육, 다른 인권 영역 유엔 인권 시스템 대응 담당자 간 상호교류, 부서 내의 업무량의 적정한 배분 혹은 재배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방정부

- ① 지방정부의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의 주도적 역할
- ②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협력 및 국가 보고 지원
- ③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협력 촉진
- ④ 국제인권규범 및 SDGs의 통합적 이행
- 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 ⑥ 지방정부 간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사례 발표 및 공유회 진행

6) 인권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 ① 인권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② 유엔 인권기구권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③ 인권통계 대시보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④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 데이터 관리
- ⑤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
- ⑥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검증 절차

5.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제언

가.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및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설치 및 운영

1)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둔다는 것은 정부 의무와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고 전문성과 경험의 체계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제상의 근거는 관련 업무 단위의 공적 책임성과 권위를 명확하여 관련 정부 부처들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 참여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³⁰⁾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내용, 그 수립과 시행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의 목록이나 기준 및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각 단위에서 계속하여 논의, 제기, 계획, 교육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당장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위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라도 마련되어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인권정책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³¹⁾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역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서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다.³²⁾

30) Universal Rights Group,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2024), p.63 참조.

31) 정정훈, "이주·인종차별 분야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실태 토론문: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후속 조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1. 12. 9.), p. 7.

32) 유남영, "국내 인권레짐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한국인권재단, 『2012 한국 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인권도시' 도전과 과제』(2012. 2. 9.-11.), pp. 309-310.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폐기되었던 법안은 제1장 총칙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등), 제2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권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과 추진성과 종합평가 절차), 제4장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유엔 제출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절차 등), 제5장 기업과 인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할 의무,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책임, 제6장 인권교육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대상인 유아 및 학생,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종사자·수용자의 인권 의식이 특히 강조되는 구급·보호시설의 직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³³⁾

2)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설치 및 운영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 및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국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상설 국가 메커니즘은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조정,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과정 참여, 이행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주관하는 국가의 공공 메커니즘 구조이다.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조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조약기구의 권고, UPR 등 유엔인권기구권고들이 각각 따로 놓지 않고 영역이나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권고체계로 재구성하는 역할 역시 이 조

33) 김수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문,”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2021. 8. 5.), pp. 5-7 참조.

직이 수행할 수 있다.³⁴⁾ 따라서 국가의 유엔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권고사항을 정리하고 조정하며 그 이행 조치를 관리하고 이것이 입법부의 참여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행 조치와 계획이 국가 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 계획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와의 통합된 계획으로 수립되어 인권기구권고와 국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인다.

셋째, 상설 국가 메커니즘은 유엔인권기구권고를 직접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나, 국가보고서의 조율과 조정, 협의, 독립적인 전문가와의 협력, 담당 부처의 조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과정을 준비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넷째, 상설 국가 메커니즘은 비준한 모든 유엔조약기구와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포괄적이어야 하며 모든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의 후속 이행 조치를 관리한다.

다섯째, 상설 국가 메커니즘은 국제, 지역 인권 메커니즘과 상호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에 대한 보완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는 국가인권기구와는 다르나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상설 국가 메커니즘이 전반적인 부처 간 조정·협의 기능의 실질적인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위원회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고, 전문성, 지속가능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처의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는 적절한 상근인력이 배치된 사무국과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³⁵⁾ 그리고 이러한 중앙단위와 각 부처를 상시적으로 연결시킬 부처별 담당관의 지정도 필요하고,³⁶⁾ 전체 과정에서 정책 조정의 권한 행사와 전문성의 활용과 축적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단위와 실무 단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34) Universal Rights Group(2024), p.70 참조.

35) OHCHR,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51/33 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upport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UN Doc. A/HRC/57/73, 26 Jul 2024, para. 64 참조; Universal Rights Group(2024), p.71 참조.

36) Universal Rights Group.(2024), p.69 참조.

하는 것도 요구된다.³⁷⁾ 정부부처와 통계청을 포함한 국가 전문 기관, 국회, 사법부와 협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향후 과제

1) 행정부

행정부는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핵심축으로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책임을 지며, 각 부처가 유엔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수립 및 조정

책임 부서: 법무부, 국무조정실

- 유엔인권기구권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 메커니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인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상설 메커니즘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긴밀히 연계하며, 각 부처가 권고 이행을 조정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조정의 핵심 목표: 각 부처는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인권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책임 부서: 법무부, 국무조정실

- 상설 메커니즘은 인권 관련 정책과 유엔 권고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부처는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상설 메커니즘이 인권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정책 방향을 조정한다.
- 모니터링 체계화: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부처가 이행한 권고사항의 성

37) OHCHR(2024), para. 64 참조; Universal Rights Group(2024), p.71 참조.

과를 평가하고, 권고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다)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책임 부서: 법무부, 국무조정실

- 상설 메커니즘은 부처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상황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 협력의 강화: 상설 메커니즘 내에서 각 부처가 상호 협력하며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을 중앙에서 관리한다.

라)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

책임 부서: 법무부, 국무조정실

- 상설 메커니즘은 인권 관련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유엔인권기구권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권고사항의 이행이 모든 부처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식 제고 및 교육 체계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특히 유엔인권기구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 피해자 지원 및 인권 구제 절차 강화

책임 부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 상설 메커니즘 내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와 지원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조정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행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상설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수립해야 한다.
- 구제 절차의 통합: 피해자 지원을 상설 메커니즘 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

고, 정부의 법적 자문 서비스 및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중앙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

바) 인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개

책임 부서: 통계청, 법무부

- 상설 메커니즘은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인권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각 부처는 상설 메커니즘에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권고 이행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고 SIMORE³⁸⁾ 모델을 참고하여, 새로운 모범이 될 수준의 디지털인권 추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데이터 투명성 강화: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데이터 기반 접근을 촉진한다.

2) 입법부

국회는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 이러한 역할은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기여한다.

가)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책임 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장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권고사항을 반영한 장단기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38) Sistema de Monitoreo de Recomendaciones, System for Monitoring Recommendations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 파라과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년도, 메커니즘, 인구 집단, 주제/권리, 기관, 단어 또는 구문에 따라 권장 사항, 후속 조치에 관련된 기관, 채택 또는 시행된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 기관에서 수행한 조치, 지표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권고 이행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적 체계를 수립한다.

나) 국가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감독

책임 부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유엔인권기구권고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권고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시, 인권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다) 국내 법률과 유엔 인권조약의 연계성 강화

책임 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 유엔인권조약기구와 국내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다.
- 유엔인권기구권고를 국내 법률에 반영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라) 권고 이행을 위한 상설 메커니즘의 입법적 지원

책임 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운영위원회

-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상설 메커니즘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상설 메커니즘의 운영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으로 심의한다.

마) 정기적인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

책임 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운영위원회

-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며 이행 상태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 이를 통해 국회가 권고 이행 상태를 직접 감시하고,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강화시켜 나간다.

바) 인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책임 부서: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토론, 조사연구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들과의 정례적 협의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국제적 인권 기준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국회는 인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국제인권기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화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

3) 사법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에서 체계화하고 이행하는 상설 메커니즘은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권고 이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역할은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 인권 관련 판결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책임 부서: 법원행정처

- 인권조약기구 권고사항을 반영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UPR 권고, 조약기구 최종견해, 그리고 국제인권법 적용 혹은 유엔인권권고 인용 법원 판결에 대해 수시로 공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사법부가 국제인권규범 적용과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나) 인권 기준을 반영한 사법 교육 강화

책임 부서: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내에 국제인권법과 인권 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현직 판사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국제인권법, 인권 조약기구 권고 및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보호 사례연구와 법적 적용 방안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인권 판결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 사법부와 타 정부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책임 부서: 법원행정처

-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인권 관련 법적 쟁점과 정책 추진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 특히, 인권 관련 법령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라) 인권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 개선

책임 부서: 법원행정처

- 인권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자문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접근성을 높인다.

마)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이행평가 및 대응 기구 설치

책임 부서: 법원행정처

- 유엔인권기구권고의 국내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독립적인 사법 기구를 설치하여, 법원의 판결과 국가 인권정

책이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지 점검한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법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한다.

4) 지방정부

가) 지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책임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 담당 부서

- 지방정부는 유엔 인권기구 권고에 기반한 지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맞추어 실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고 이행과 맞물려, 지방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나)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확대

책임 부서: 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팀

-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여 지역 내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인권 협력 강화

책임 부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협력 부서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상설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권고 이행방안이 지역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정기적인 보고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지방정부 인권교육 및 홍보 확대

책임 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홍보 부서

- 지방정부는 유엔 인권기구 권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인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 주민들에게 권리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사례 공유

책임 부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협력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로 효과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인권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 지방정부와의 연계된 인권정책 통합 계획 수립

책임 부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유엔 인권기구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중앙 차원의 상설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인권정책 통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역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 상설 메커니즘 내에서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방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중앙과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사) 정기적인 중앙-지방 협력 회의 및 소통 체계 구축

책임 부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유엔 권고 사항의 이

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회의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지방정부는 상설 메커니즘의 주요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아) 지방정부 인권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배분

책임 부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권고 이행을 위한 예산이 지방정부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자원 배분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각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실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의 배분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

5) 통계청

가) 유엔인권기구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권고사항과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 이행 상태, 관련기관, 권고 이행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인권 보호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정책국

- 이 부서들은 데이터 제공 및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권고 이행을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권고 이행의 진척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이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권고 이행을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 법무부 인권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은 지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다) 지방정부와 협력한 데이터 수집 체계 강화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유엔인권기구 권고이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인권 이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반영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협력한 데이터 수집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정부 인권 담당 부서

- 법무부 인권국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차원의 인권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데이터 검색 시스템 구축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권고 이행 상황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유엔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이행 상태를 년도, 권고 기구, 주제, 인구 집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전략국은 검색 시스템의 기술적 지원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마) 데이터 투명성과 공개성 보장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및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권고 이행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국,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

-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 관련 데이터의 적절한 공개 기준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바) 정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및 검증 절차 도입

책임 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고 이행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정책국

- 법무부 인권국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정책국은 권고 이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 SIMORE 시스템과 유사한 데이터 관리 체계 도입

책임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SIMORE와 유사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 법무부는 인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외교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권고 이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아)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책임부서: 통계청

- 통계청은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권고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협력 부서: 법무부 인권국,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평가 및 조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6. 나오며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효과성은 대한민국 내 인권정책 전반의 수립과 이행 메커니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결국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인권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가의 ‘인권을 향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³⁹⁾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위해 유엔인권권고를 효과적이고 건설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려는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들의 의지, 진지한 접근, 그리고 세밀한 디자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39) 최은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 관련 토론문: 인권행위자들(한국정부와 한국민간단체들)의 후속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1. 12. 9.), pp. 58-59; 오재창,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1. 12. 9.), pp. 281-282.

이러한 방향의 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충분하고 전문적인 인력과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시 의지와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방향의 정치적 결단과 실행이 없으면 결국 모든 인권을 향한 변화는 의사결정권자에게는 불편하고 예민한 문제로만 다가오고 실무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된다.

누군가 얘기했듯이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다. 인권이 문제가 될 때는 다수가 반대하고 권력이 불편할 때이기 때문에 쉬운 인권의 길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인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의사결정권자, 인권을 내건 조직의 실무자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 취약한 상황에 놓여 괴로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요원한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와 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정부를 기대해본다.

[토론 1]

국내 NMIRF 구축 · 운영 과제와 실행 가능 방안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1. 현황 / 문제점

- 8개 협약 비준 / 이 중 법무부 소관 4개 / 복지부 2개 / 외교부, 여가부 각 1개
- 법무부의 경우 직원 네 명이 UPR 4.5년(중간보고서), 4개 협약 심의 및 개인진정 답변서 작성, 특별절차(서한, 방문) 대응 / 사무관(평균 근무기간 2년), 전문위원(평균 근무기간 1년) / 기타 국회, 예산, 조직 업무
- 여러 부처에서 보고서(NAP), 답변서 작성 : ①비협조, ②층위, 구체성 제각각(이해도 차이, 결재권자 스타일 차이), ③단순 취합과 지시 사이

2. 상설 국내 메커니즘 신설을 위한 고려/준비 사항

- 법률, 예산, 인원 필요 : 실무상 첫 출발은 인권정책기본법(원인이 아닌 결과) / 현재 모든 국가인권업무의 구체적 법적 근거 無(실무상 헌법 제6조, 국제조약)

- 모로코 국가 메커니즘, 80명 직원 확보 목표(2016년)
- 조지아, 총리가 의장, 17개 이상의 국가 기관 포함
- 포르투갈, 외교부 장관이 의장(모든 부처의 장관이 위원), 외교부 인권과가 상임 사무국 역할, 1년에 3차례 전체회의

- 국가 정책 우선 순위 :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구체성 / 득표에 기여
 - 대통령 위원장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사실상 정지)

- 국무총리 위원장 : 아동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 우주위원회,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 폐지 :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 제21대 국회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국내 메커니즘 기능은 아님)

○ 인적 구성

- 자유권규약(22개 기관), 사회권규약(31개), 고문방지협약(21개), 강제실종방지협약(17개), UPR(14개)
- ※ 자유권①법무부/대검 151, ②고노부 38, ③여가부 31, 고문①법무부/대검 241, ②국방부 48, ③경찰청 41, 사회권 보고서①복지부, 고노부, ②법무부
- 파견 기관 유동적 운영(유엔 심의, UPR, NAP 일정 고려)
- 입법부, 사법부 참여 : 필요하나 해결 과제 多(기관 대표성, 권력분립 이슈 / 지자체는 대표성 문제) / 20대 국회, 여가위 내 국제규약점검소위 신설(2016년) / 법제사법인권위원회(상설 메커니즘 신설 시)

3. 상설 국내 메커니즘 운영 / 효과

○ 담당 업무 : 단순, 일회성 취합 지양

- 인권NAP 5년 주기(+ 매년 이행상황 점검)
- UPR 4.5년 주기(+ 중간보고서)
- 8개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참여 및 최종견해 이행 정기적 점검
- 개인진정 답변서 작성(6개 협약), 견해 이행 / 소관 다툼 X
- 특별절차(서한, 방문) 대응 / 초청

○ 추가 업무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아동권리협약/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논의
- 데이터베이스(파라과이 SIMORE) 구축(☞ 판례 변화 기대)
- ※ 이상적 한 예로, 정부 초안 →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의견 → 정부 의견 기재 → 최종안 모두 게시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자체 NAP와 국가 NAP 연계, 지자체의 유엔 협약 심의 절차 참여

4. 계기

- UN : ①반복된 질의, ②추상적 권고, ③처리 기간 / 상설화 필요
- 법원
- 인권정책기본법

[토론 2]

국내 NMIRF 구축 전략 제언 : 입법부의 역할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시행하고 있고, 개별 인권조약 기구들은 심의를 통해 당사국들에게 일정한 개선 과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¹⁾ 이와 같은 내용을 위시한 ‘유엔인권기구 권고’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유엔 회원국이나 조약 당사국들의 이행이나 후속 조치는 권고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여 이른바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²⁾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국제인권 분야에서는 국가가 유엔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제로, 소위 이행·보고·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³⁾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NMIRF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⁴⁾ 이는 소관 행정부처가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대응하는 - 일종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부처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어 보고서를 집필하는 예도 있”고, “실제 심의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이 걸리는 일도 있”다는 사정에서 일응 엿볼 수 있는 것

1) 조영미(발제 1), 1쪽.

2) 조영미(발제 1), 1-2쪽. 개별적인 유엔인권기구 권고 제도의 양태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황필규(발제 2), 1쪽 각주 1번), 두 발제문은 대체로 본문에 기재된 두 가지 형태의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발제 2의 경우, 해당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황필규(발제 2), 같은 쪽 같은 각주), 토론문에서도 위 두 권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습니다.

3) 조영미(발제 1), 2쪽.

4) 조영미(발제 1), 2쪽.

으로 생각됩니다.⁵⁾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는⁶⁾ 행정부마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본격적인 역할은 더욱 찾아 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⁷⁾ 이는 국내 NMIRF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어떻게 국회가 기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발제문들을 읽고 들었던 생각들을 그저 두서없이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임무에 임하려 합니다. 큰 틀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위한 실효적인 기제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논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부족한 탓에 충실한 토론에 이르지 못할 듯한 점 미리 깊이 송구합니다.

1.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관련

유엔인권기구 권고가 국내법 질서에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엔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조치는 헌법 제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것임에도,⁹⁾ 현재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해당 권고를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의 의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¹⁰⁾ 그렇다면 인권에 관한 정책 전반에 대한 일

5) 황필규(발제 2), 3쪽.

6) 조영미(연구책임), 문아영, 이대훈, 황필규,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4(이하 ‘보고서’로 약칭하였습니다), 34쪽.

7)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전반에 걸쳐 국회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고, 국회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보고서, 39-40쪽

8)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하는 UPR 권고의 50% 이상은 그 이행을 위해 국회의 조치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보고서, 169쪽).

9) 황필규(발제 2), 1-3쪽.

10)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해서 논쟁이 진행될 때 법무부장관이 아예 보도자료를 내서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바인딩하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참여자 K).”, “헌법 6조는 대체 어디에 간 건가요(참여자 L)?”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보고서, 143쪽).

종의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권고 이행과 관련한 각 국가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한 국내법으로서의 인권정책기본법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¹¹⁾

이와 같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근거 법률의 내용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비될 것이라고 기대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적어도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면 실무적으로도 그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수월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¹²⁾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며 상설적 운영과 전문적인 실무구조를 갖춘 국가 메커니즘이 임시적 성격의 메커니즘보다 월등하게 체계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¹³⁾

2. NMIRF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 관련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입법부’ 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어떠한 국회 내상설 기구를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주체로 규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거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¹⁴⁾ 한 선행연구에서는 국회 내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심사하는 상설 조직으로 소관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거론하고 있는데,¹⁵⁾ 발제 2에서는 해당 논의가 NMIRF 구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습니다.¹⁶⁾

사족을 덧붙여 보자면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굳이 ‘위원회’라는 조직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국회사무처에 소속되어 법제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실¹⁷⁾이라든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조직인 국

11) 황필규(발제 2), 11-12쪽.

12) 같은 취지로 보고서, 155쪽(참여자 G 발언).

13) 조영미(발제 1), 17쪽.

14) 황필규(발제 2), 8쪽.

15) 최정인,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입법과 정책 통권 제3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22-23쪽.

16) 황필규(발제 2), 8-9쪽.

회입법조사처(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나 국회미래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법)과 같은 조직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소관 의안이나 청원 등에 대한 심사하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상설)위원회 조직(국회법 제36조 참조)과 비교할 때, 이들 국회 내 행정조직들은 상대적으로 입법과정 전반을 망라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NMIRF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창설이라든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현재 NMIRF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중첩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 분장의 필요성 또한 고민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법부의 NMIRF 참여(상호작용) 방안 관련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검토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온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¹⁸⁾ 이는 국회가 NMIRF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국회에서 권고 이행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데에는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¹⁹⁾ 그렇다면 위 2. 항목에서 언급된 국회 내 기구가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대한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7) 특히 현재 국회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는 법률의 헌법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이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현재 존재하는 법제의 의미를 검토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업무의 성격은 유엔인권기구 권고가 어떻게 국내법에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 본문 및 각주의 내용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사무처 소개-조직안내 항목

(<https://nas.na.go.kr/nas/main/contents.do?menuNo=1800021>)에서 검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최종확인일자 : 2024. 12. 4.)].

18) 보고서, 142쪽(참여자 H, 참여자 P 발언).

19) 유사한 취지로 보고서, 149쪽(참여자 G 발언).

니다. 관련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의 입법과정에 이른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Legislative Impact Analysis)²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있는 사안의 경우에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제인권법의 실현과 관련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토론자에게 소중한 공부의 계기를 제공해 주신 두 분 발제자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족한 토론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 제도로,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수용도와 현실 적합성, 집행 가능성, 체계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로서의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강승식(연구책임자), 조재현, 이재희,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갖는 법적 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3, 3쪽].

NMIRF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축

강지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 글에서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 등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이행·보고·후속조치 추진체계’(NMIRF)에서 인권옹호자¹⁾를 포함한 시민사회 행위자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유엔인권기구 절차에서 시민사회와 왜 협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효적인 협력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1.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 절차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²⁾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 특히 법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유엔인권기구에 제공하여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유엔인권기구에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 발표 후 이를 동료 시민에게 알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촉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특히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담당 부서와 실무자도 시민사회와 건설적이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유엔총회 결의 53/144, 1998. 12. 9.) 제1조 및 제12조 제1항.

2) 강지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로 본 시민사회의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참여 방식과 의의" (인권연구 6권 2호, 2023).

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권 의제별 시민사회의 주요 우려와 요구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입장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 등의 이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특정 권고, 결정의 즉각적인 이행이 어렵더라도 그 배경, 원인에 대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고민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 나가는 것이 유엔인권기구에서 바라는 유엔 회원국, 인권조약 당사국의 모습일 것이다.

2. NMIRF와 시민사회 간 실효적인 협력을 위한 선결 과제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소통과 협력은 매우 부족하다. 연구보고서에도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부족’, ‘권고 이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 부족과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참여 제한’,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민사회의 참여 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고서 작성 참여 및 권고 이행 모니터링 강화’, ‘시민사회와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 등을 제안한다.³⁾ 모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동안 어떤 이유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선결해야 한다.

그 원인은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전문가 초점 집단인터뷰 및 개별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 일부 유추할 수 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국가보고서와 심의에서 반복되는 무성의한 답변, 권고 이행 계획 및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협력 대신 비판하는 방식을 택하고, 이에 정부 담당자 측도 “너무 공격적”으로 “계속 밖에서 이렇게 때리는” 상황⁴⁾에 부처 담당자들이 시민사회와 만나는 자리를 꺼리고 소통과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이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진

3) 조영미, 문아영, 이대훈, 황필규,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 역보고서, 2024)(이하 ‘연구보고서’), 58-59, 177-178쪽.

4) 위의 글, 147쪽.

단할 수 있다.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이 정부를 주체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구하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 측 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가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공청회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시민사회단체를 내부적으로 ‘반정부 단체’로 표현하는 등⁵⁾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거나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는 등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이고 지나친 비판을 지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부적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정부, 특히 NMIRF 담당 부서 및 실무자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해나가야 한다. 실제로 다른 국가의 조약기구 심의 현장을 보면 정부 대표단과 시민사회 대표단이 긴밀하고 호의적으로 소통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인권 정책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NMIRF 담당 부서와 실무자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반영하며, 입장에 간극이 있더라도 진솔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앞으로 대한민국 유엔인권기구 심의, 검토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길 바란다.

3. NMIRF와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NMIRF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상설 또는 임시(ad hoc) 협의 또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거나 국가 이행, 보고, 후속조치의 주요 과정에서 공청회, 간담회 등 절차를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식보다 어떠한 실질적인 원칙을 가지고 설치, 운영할지가 중요하다.

이에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NMIRF와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

5) 위의 글, 147쪽.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NMIRF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및 절차를 명시한다. 둘째, NMIRF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국가적 인권 정책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과 긴밀히 연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및 절차를 확립한다. 셋째, 국가보고서 제출 과정뿐만 아니라 권고의 이행, 모니터링,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한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섯째, NMIRF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고,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다. 여섯째, 시민사회 공간을 보호·강화하고 유엔인권기구 절차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실효적인 NMIRF-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인식 개선, 신뢰 회복과 함께 NMIRF 담당 부서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와 실무자는 각 기관 내에서 인권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원을 요구하는 옹호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의 의사결정권자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인쇄| 2024년 12월

|발행| 2024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전화| 02)2125-9887 |FAX| 02)2125-0918

|Homepage|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두루행복한세상 (여성·장애인표준사업장)

|전화| (070) 4659-0803 |FAX| (070) 7500-1146

ISBN 979-11-7214-042-7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